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01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4. 2.

서 민 우 의원

# 제안 설명서

제안자: 서민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
-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및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9조제2항 “위원회 구성” 과 관련 당연직 위원으로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을 추가하고,
-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5조제1항 중 “의견청취” 를 위하여 토론회,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- 안 제1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“보완계획서” 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, 별표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.

- 마지막으로, 축제 평가 후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안 제19조에 추가하여 세부 평가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차년도 개최 축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,
-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서민우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1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4. 2. 2.

발 의 자: 서민우, 박정환, 권숙자,  
박종길, 고명욱, 도하석,  
이영빈, 임미연

## 1. 개정이유

달서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·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개최될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함(안 제9조)
- 나. 의견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함(안 제15조)
- 다.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추가함(안 제17조 및 안 별표)
- 라.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항목을 추가함(안 제19조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
- 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창달”을 “발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수 있다”를 “수 있으며,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,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축제운영자는 별표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평가결과”를 “평가 결과(평가 항목별 평균점수 포함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축제”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, 지역 고유문화 <u>차</u>달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구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</u> <u>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</p>

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(생략)

2. 달서구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

3.·4.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(생략)

제15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축제평가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·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15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수 있으며,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,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축제평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축제운영자는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계획

제19조(평가결과 공개) 구청장은  
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 
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 
다.

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 
다.

제19조(평가결과 공개) -----  
----- 평가 결과(평  
가 항목별 평균점수 포함)-----  
--.

[별표] 평가 항목

축제명		평가위원	(인)
-----	--	------	-----

항목		평가지표	배점
1	콘텐츠 (20)	(1-1) 기획 의도에 맞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가?	10
		(1-2)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?	10
2	운영 및 관리 (30)	(2-1) 효율적 축제 운영을 위해 예산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?	5
		(2-2) 축제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및 유관기관 협조가 적절한가?	5
		(2-3) 다양한 홍보를 통해 축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는가?	10
		(2-4)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였는가?	10
3	지역 사회 기여 (20)	(3-1) 축제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?	10
		(3-2) 축제 참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적절한가?	10
4	추진 성과 (30)	(4-1) 사업계획에 맞게 충실하게 성과를 달성 하였는가?	10
		(4-2) 성과관리를 통해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?	10
		(4-3) 향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?	10
기 타	감점	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가?	최대 -5
		과도한 예산을 수반하는 프로그램(연예인 등)이나 식순을 포함하였는가?	최대 -5
<b>합 계</b>			<b>100</b>

- ※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은 총 배점 범위에서 조정 가능
- ※ 축제의 특성상 일정기간(내부 협의를 통해 설정 가능) 유지를 필요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

## 【 관계 법령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4. <생략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~다. <생략>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<생략>

6.·7. <생략>